

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

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지원사업 및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국가수준의 정책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22일
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
채용 분야	인원	주요업무	지원자격	기 타
운영요원 (계약직)	체험자유 놀이실 (1명)	- 체험·자유 놀이실 개인·단체 회원 관리 및 센터 기타 업무 지원	-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	화~토 근무
	일사 천리 (1명)	- 보육헬퍼 관리 및 부모 자조 모임 운영 - 그 외 센터 기타 업무 지원	-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	월~금 근무
	행정 지원 업무 (1명)	- 행정지원 업무(회계 및 전산관리)	- 컴퓨터 활용 가능자	

2. 근로조건 및 보수기준

채용 분야	채용형태	근로조건	보수기준	근무지
운영요원	계약직 (1. 1. ~ 12. 31.)	- 근무시간: 1일 8시간, 주5일 휴게시간 1시간 / 주 40시간 - 복리후생:근로기준법준용 (연월차, 휴가 등)	2022년 최저임금 적용 기본급 :1,914,440원 식 비 :140,000원 - 4대보험 적용	여수시 육아종합 지원센터

3.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

전형구분	전형일정	비고
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	2021. 11. 22.(월) ~ 2021. 12. 17.(금)	제출서류: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1부)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1. 12. 22(수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면접전형	2021. 12. 23.(목)	구술면접
최종 합격자 발표	2021. 12. 24.(금)	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
근무시작일	2022. 1. 3.(월)	근무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간 있음 센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

지원 시 제출서류	면접 시 제출서류(면접대상자에 한함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입사지원서(사진반명함판) (반드시 최근 3개월이내 사진으로, 포토샵 금지) ○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○ 자기소개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○ 자격증 사본 1부 ○ 경력증명서(관련증빙서류 포함) 1부

- 전형방법 : 1차 서류 -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(yeosuchildcare@daum.net)
 - ※이메일 제목을 ‘채용분야-성명’로 작성 (예시)‘운영요원’ - 홍길동’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이메일)
 - ※접수는 마감일시(2021. 12. 17. 16:00) 도착 분까지 유효함

5. 기타사항

- 채용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.

-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문의처 :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김영미 ☎061-692-0756

※참고 :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 -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 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- 3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(제48조제 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